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0 선고 2022가단51472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박일섭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3. C
변 론 종 결 2023. 3. 13.
판 결 선 고 2023. 4. 10.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3,307,261원 및 그 중 12,960,000원에 대하여 2022. 4. 27.부터 2022. 9. 17.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은
34,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나. 8,359,754원 및 그 중 7,990,948원에 대하여 2022.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3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22. 2.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2. 2. 25. 접수 제22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2. 2. 25. 접수 제28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2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여신한도금액을 29,000,000원, 여신만료일을 2024. 4. 22., 여신이자율을 12월물 KORIBOR에 13.468%를 더한 금리, 지연배상금률을 여신이자율에 연 3%를 더하되 최고 지연배상금률을 연 11%, 2019. 5. 22.부터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기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의 위 각 대출원리금 지급채무를 34,8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4. 23. 원고에게 신용카드 회원신청을 하면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정한 이율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이율은 연 19.37%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채무를 12,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22. 3. 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22. 2.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22. 4. 26. 기준으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금은 12,960,000원, 이자는 347,261원이며, 2022. 4. 27.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대금 원금은 7,990,948원, 이자는 368,806원이다.

라. 피고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21. 피고 C과 채권최고액 9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2. 2. 25. 접수 제229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2. 2. 25. 접수 제284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 합계 13,307,261원(= 원금 12,960,000원 + 이자 347,261원) 및 그 중 원금 12,960,000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계산 최종일 다음날인 2022.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인인 2022. 9. 17.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연대보증 한도액인 34,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원리금 합계 8,359,754원(= 원금 7,990,948원 + 이자 368,806원) 및 그 중 원금 7,990,948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계산 최종일 다음날인 2022.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22. 9. 17.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9.3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근보증 한도액인 1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2. 2. 21. 이전에 이미 피고 B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시가 합계 25,605,000원(= 이 사건 제1부동산 3,843,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21,762,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 외에도 E은행에 대한 146,329,000원, F은행에 대한 26,809,000원, G은행에 대한 46,331,000원, H은행에 대한 13,405,000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I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수익자 피고 C의 악의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피고 C의 위 항변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의 계좌로 2022. 2. 17. 30,000,000원, 같은 달 18. 3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다시 피고 B이 J에게 2022. 2. 17. 29,267,500, 2022. 2. 18. 31,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어서 J는 K에게 2022. 2. 16. 10,000,000원, 같은 달 17. 25,000,000원, 2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다시 K은 2022. 3. 8. 피고 C에게 6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 C이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그 무렵 J, K을 거쳐 다시 피고 C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2항의 나, 다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기

별지